

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2021. 8.

1. 개정이유

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거나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사유로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장등록(변경등록)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변경등록의 경우 정기 안전검사 결과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. 변경등록 시의 현행 규정은 변경되는 장치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정기 안전검사 결과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, 목적이 모호하고 변경 장치의 실질적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 이에 따라 변경된 구동 무대기계·기구에 대하여는 동 법 제12조(무대시설 안전진단 등)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연장 등록 전 안전검사 기준을 적용한 안전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실제 적용의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함. 또한, 제6조의4제1항제3호의 내용 중 시행령과 일치되지 않는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

2. 주요내용

가. 변경등록 시 제출서류

변경등록 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정기안전검사결과 및 정밀 안전진단결과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개정을 통하여 변경된 무대기계·기구에 대하여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만 제출하도록 함.(안 제6조제1항 개정)

나. 일부 오류 사항 수정

시행령과 일치하지 않는 오류사항 수정(제6조의4제1항제3호 개정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2) 입법예고 예정

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공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나. 변경등록: 변경된 구동 무대기계·기구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기준을 적용한 안전진단 결과

제6조의4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3. 영 별표 1의3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제1항제6호나목은 공포 이후 공연장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공연장등록신청서등) ① (생략) 1. ~ 5. <생략> 6. <생략> 가. <생략> 나. 변경등록: 법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결과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(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한다)	제6조(공연장등록신청서등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(현행과 같음)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변경등록: <u>변경된 구동 무대기계 · 기구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기준을 적용한 안전진단 결과</u>
제6조의4(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등) ① (생략) 1. ~ 2. <생략> 3. 영 별표 1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	제6조의4(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등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영 <u>별표</u> <u>1의3</u>에 ----- -----